

파주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안)

의안 번호	419
----------	-----

제출년월일 : 1999. 5.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안이유

- 파주시정에 공로가 현저한 내·외국인 또는 파주시를 방문하는 외국 귀빈에게 수여하는 「파주시명예시민증서」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주요골자

가. 명예시민증서 수여 절차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나. 명예시민증서 서식 (안 제3조)

다.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파주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정에 공로가 현저한 내·외국인 또는 파주시를방문하는 외국 귀빈에게 수여하는 파주시명예시민증서(이하 “명예시민증서”라 한다)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증서수여) ①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공적조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미리 시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명예시민증서에는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3조(명예시민증서 서식과 등재) ①명예시민증서의 서식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②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한 때에는 명예시민증서 수여대장(별지 제3호서식)에 이를 등재하여야 한다.

제4조(권리의무) 이 조례가 정한 바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자가 원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1항 및 제14조의 권리행사 및 의무부담을 허가할 수 있다.

제5조(취소)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자가 그 수여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공 적 조 서

국	직		
주소또는소속			
직업 및 직위			
성	명	생년월일	
공적사항(6하원칙에 의거 작성)			
주요경력			
년월일	이력	년월일	이력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명 인			

〈별지 제2호 서식〉

제 호

명 예 시 민 증 서

국 적

주소 또는 소속

성 명

대한민국 파주시장은 시민을 대표하여 귀하에게 파주시 명예시민증서를 드립니다. 이에 본인이 서명하고 파주시의 관인을 찍어 이를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대한민국 경기도

파 주 시 장 ○ ○ ○ (인)

No.

HONORARY CITIZENSHIP CERTIFICATE

Nationality

Name

Address or Organization

As the mayor of Paju City and on behalf of the citizens, I confer upon you an honorary citizenship of Paju City. My signature and seal of the City of Paju have been affixed to verify your citizenship.

Date

Mayor of Paju City

Kyonggi Province, Republic of Korea

〈별지 제3호서식〉

평에시민증서 수여대장

[illegible]